

(관련생략)

서울특별시

법무 01255-1064 731-6157 1991.7.3.

수신 수신처장조

제목 행정심판업무처리요령시달

1. 국행심01255-223(1991.6.25)호의 이첩업.

2. 서울특별시의외외가 구성되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1991.5.31 법률제4371호)이 시행되게 되었음.

(※ 시행일 : 서울특별시 외외구성일부칙 - 1991.7.8예정)

3. 이에따라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국무총리소속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제결은 국무총리가 행하여 왔으나

4. 앞으로는, 심리.의결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제결은 행정심판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의거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행하도록 되었으므로 행정심판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첨부 행정심판업무처리요령도 1부. 끝.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 전결)

수신처 서국이-85, 서본부이-04, 서사이-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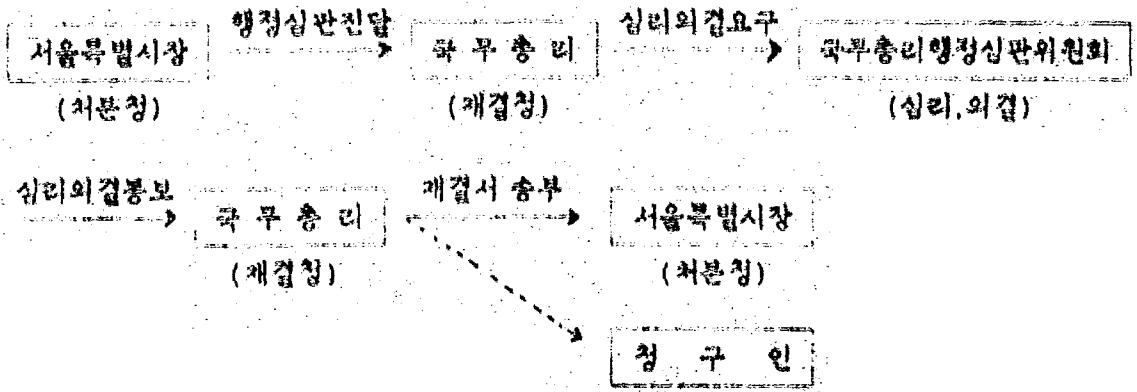
시					
	143	1197			

# 행정심판업무처리흐름도

## 현 행

### 1. 국무총리재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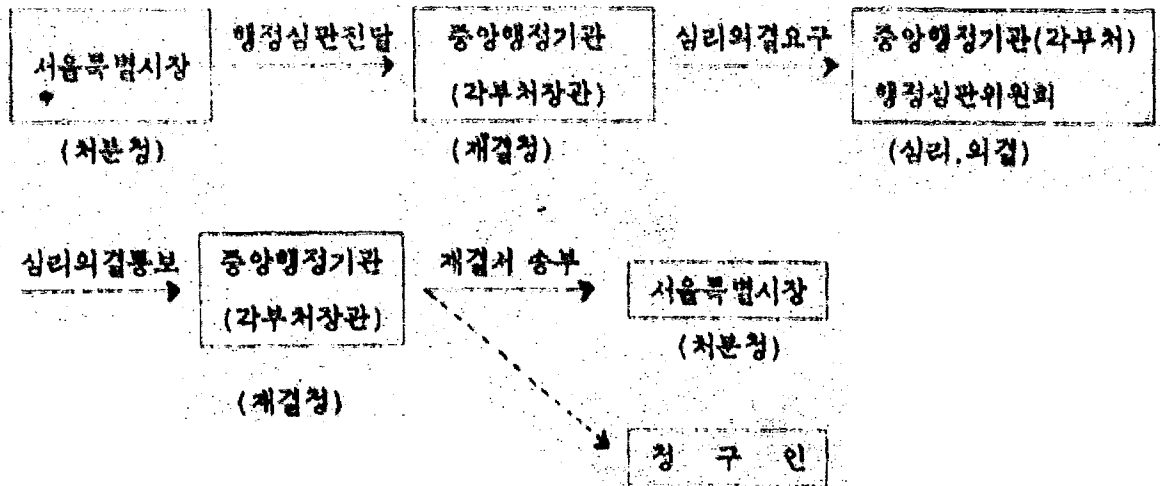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각부처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모든 업무



### 2. 중앙행정기관(각부처장관) 재결

근거법률 :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sup>제13조</sup>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업무내용 : 지적에관한사항, 외자구매에관한사항, 비료, 농약등의수급 및 단체에 관한 사항등 92종류의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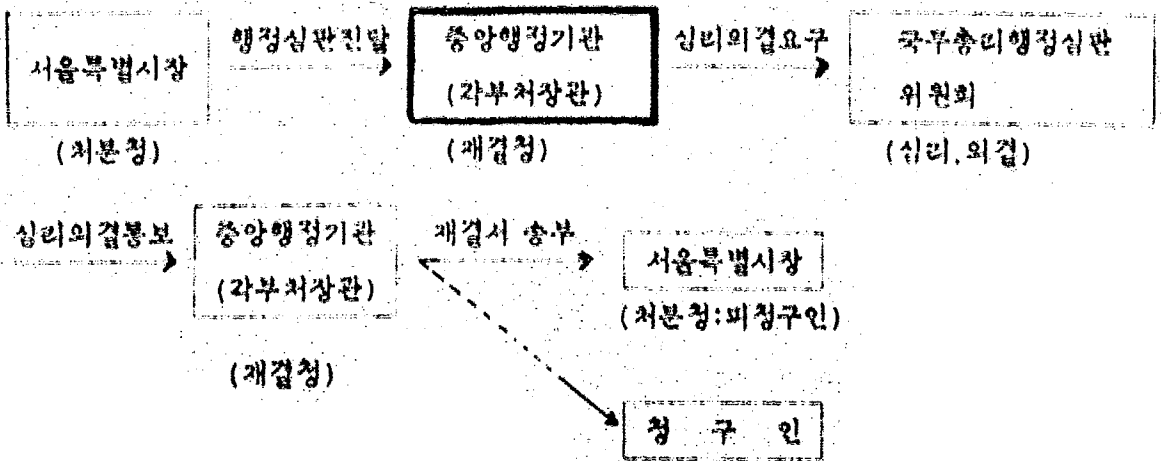


# 개 정

- 근거법률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 내 용 : 서울특별시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의결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함.
- 시 행 일 : 서울특별시의회구성일부터 시행(1991.7.8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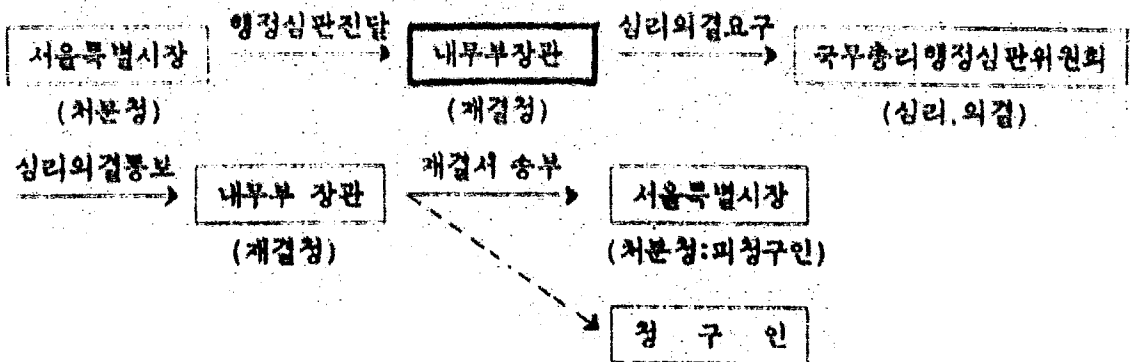
## 1. 중앙행정기관(각부처장관)재결

;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관한 업무



## 2. 내무부장관 재결

;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 유의사항 : 향후 행정심판 진달은 당해 업무 감독청인 중앙행정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인지 명확히 판단, 반드시 법무 담당관실 경유하여 진달.